

전자상거래 규범 형성에 있어서 정부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 of government for formative of
Electronic Commerce Regulation

송 수 정 *

Song, soo jeong

문 태 수**

Moon, Tae Soo

Abstract

민간자율규제와 정부개입의 최소화의 조율은 업계의 자율규제를 기본으로 하여 정부의 법정책적인 보호 및 규제를 병행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소비자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업계의 충실향한 자율규제를 촉구하고,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 형성의 전망을 중심으로 국내 전자상거래 규범 형성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1. 서 론

전자상거래도 경제활동의 일부로서 거래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법제도를 통한 정부의 개입은 전자상거래 발전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새로운 유형의 경제활동인 전자상거래의 발전에는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경쟁력이 요구된다. 전자상거래 기업의 제약없는 발전이 전자상거래 발전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국내법상 확립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법규범은 전자상거래 활동의 내용과 성격을 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해당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발전으로 사회의 공서약속이나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훼손되어서는 아니된다.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이 이점에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만일 민간의 자율규

* 신성대학 산업경영정보과

** 신성대학 전자·정보통신계열

제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하여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민간부문의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며, 전자상거래가 기존의 거래와 차별을 받지 않고 또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제도에 의한 정부의 개입이 제한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미국과 EU 등 전자상거래의 선도국에서는 대체로 민간부문의 자율규제는 최대화하고 정부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와 기업사이에서 합의되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 형성의 전망을 중심으로 국내 전자상거래 규범 형성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전자상거래 규범 동향

2.1 미국

미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규범 형성은 1997년 7월 1일 Bill Clinton 대통령이 '세계 전자상거래골격'을 발표하면서 구체화되었다. 동 선언에 따라 미국은 상무부, 무역대표부 (USTR), 재무부, 연방거래위원회 (FTC) 등 주요 연방기관들을 포함하는 전자상거래 작업반을 구성하여 미국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정책 및 규범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1997년 세계전자상거래골격은 미국의 정보고속도로 구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정보인프라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GII)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GII환경에서 중요한 상거래 수단인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주요한 원칙들을 천명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1997년 세계전자상거래골격과 함께 발표된 '전자상거래에 관한 대통령지침'을 바탕으로 전자상거래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2.2 한국

전자상거래의 확대에 따라 상거래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기존 상거래에서 경험하지 못한 많은 문제점들이 새롭게 발생하고 있다. 즉, 전통적 상거래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는 전자상거래에 기존의 거래규범 등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게 된다. 이에 전자거래에 대하여 전통적 상행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는 한편, 이용자가 신뢰하고 안전하게 전자상거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자율적인 전자상거래의 촉진을 위한 전자거래기본법이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34호로 제정되어 1999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한편, 정부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민간주도에 의한 추진, 정부규제의 최소화, 전자거래의 신뢰성 확보 및 전자거래분야의 국제협력강화 등의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자거래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전자거래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고 있다.

3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 형성 전망

(1) 조세 및 관세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조세 및 관세문제는 각국의 세수확보와 결부되어 논의가 활발한 분야이다. 1997년 세계전자상거래골격 발표 이후 일관되게 무관세 및 무조세를 주장하고 있는 미국은 인터넷을 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Zone)로 규정하고 영구적인 무관세와 무조세에 대한 범세계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EU는 디지털제품의 잠정적인 무관세 및 무조세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이 방침을 영구화하는데는 신중한 입장에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도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인한 세수감소로 무관세화와 무조세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 전자서명 및 인증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비대면적인 사용자간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며 의사표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과 관련된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 일본,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전자서명법'이 통과되어 시행중이거나 시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UNCITRAL에서는 국가들이 자국의 전자서명법의 입법에 기초가 될 '전자서명통일규칙초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3)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와 분쟁해결 및 관할권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사기·기만거래의 가능성이 높아서, 그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도 있다. 특히,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의 경우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는 간단하지 않은 문제이다. 현재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각국의 법·정책은 일반적으로 민간의 자율적 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정부가 보조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민간의 자율적 규제를 좀 더 강조하고 있고, EU는 상대적으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인정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OECD는 1999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에서 민간부문의 이니셔티브를 장려하고자 하였으며, 국내 및 국제적 수준에서의 정부, 기업 및 소비자들 사이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 전자결제

전자상거래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전자결제는 필수적이다. 현재 미국에서의 전자지불에 관한 논의는 1997년 대통령지침에 따라 재무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고, 일본은 대장성을 중심으로 법정책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

(5) 보안 및 암호

보안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는 암호화 기술의 사용과 수출 제한 그리고 정부의 암호화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의 문제이다. 현재 보안 및 암호화에 관한 규범의 형성은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암호화 기술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복구방지암호화체계 (Non-recoverable Encryption System) 등 주요 핵심기술을 수출금지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0년 7월 17일 미국 행정부는 미국 기업들이 정부의 허가 없이도 EU와 기타 8개 국가에 있는 최종소비자나 정부 및 비 정부기관에 암호소프트웨어를 수출할 수 있다는 정책을 발표하여 암호관련 제한 정책을 완화하고 있다. 미국이 암호화기술을 일부 국가들이지만 개방한 것은 한편 관련 미국식 암호화기술의 세계화라는 측면을 고려하였을 것이다.

(6) 지적재산권

기술발전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도 증가한다. 특히 디지털 저작물의 경우, 복제품이 원본과 품질상 동일하며, 인터넷 및 PC통신망을 통해서 용이하게 배포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관련 저작권 문제는 거래의 대상인 저작물의 불법이용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게 될 것이다. 전자상거래의 지적재산권의 문제는 WIPO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WIPO는 이를 위해 2000년 5월 '전자상거래와 지적재산권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하여 지금까지의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검토하고, 향후 두드러지게 나타날 문제점들에 대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4. 정부의 대응 방안

(1) 부처간 혼란의 극복

우리나라는 정보화 산업의 인프라구축과 관련 법제도의 마련에서 비교적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은 바람직하지만, 정부 부처간 지나친 경쟁으로 상호 사전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전자상거래의 발전이 저해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최근 제정 · 시행되고 있는 전자서명법과 전자거래기본법, 및 개인정보보호지침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등에서 부처간 혼란으로 인한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전자거래에 대한 정부업무의 영역을 놓고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대립관계에 있다. 산업진흥이라는 측면에서 산업자원부가, 정보통신에 관련된 차원에서 정보통신부가 각각 자신의 독자적인 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조정된 결과가 산업자원부의 '전자거래기본법'과 정보통신부의 '전자서명법'의 채택이다. 문제는 서로 다른 정부부처의 주도로 채택된 이들 법이 상호 보완적이지 못하고 충돌하고 있는 사실이다.

(2)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

현재 전자상거래 규범형성은 OECD가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소비자정책위원회, 다수의 작업반 및 5개의 TAGs 가운데 우리나라가 의장·부의장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관이 없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들 작업반의 구성시기가 한국이 OECD에 가입한 1996년 12월 12일 이전[미주 1015]이라는 점에서 후발 회원국으로서의 협약이 있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5개 TAGs의 경우 한국의 OECD 가입 후 2년이 지난 1999년 1월 구성되었음을 고려할 때 아직 지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가 있다. 전자상거래규범이 '형성되어 가는 규범'이고 '개방성'과 개별국가내에서 독자적인 규범체계가 발전하기보다는 국제규범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 정부는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3) 개인정보보호정책의 강화

전자상거래의 비대면성으로 온라인에서의 소비자보호는 오프라인에서 보다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비록 전자상거래 시장이 소비자들에게 시간적으로나 구매방법에서 편리성을 주는 이점을 가지지만, 이러한 이점들은 상품 및 서비스의 보다 안전한 구입을 포함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가 사기나 기만행위와 같은 불법적인 영업관행에 관련되지 않아야 하며, 거래 과정에서 불만을 가진 소비자가 공정하고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짐으로써 소비자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면 전자상거래는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소비자보호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가 핵심적인 부분이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통신망법개정안에서 개인정보보호규정이 대폭 강화된 점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4) 새로운 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처 - 규제개혁

규제개혁의 핵심은 민간자율규제원칙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보장하는데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보호, 지적재산권보호 등의 영역에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개입의 정도는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예측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망법개정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물등급제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사전검열이 허용될 수 있는 등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즉, 등급을 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완전할 뿐 아니라 결국 사람이 주관하는 기관(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편견을 배제할 수 없으며, 만약 단일 표준에 의한 내용 등급제가 시행된다면 정부는 사업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통해 비판적 내용을 사전에 걸러내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민간자율규제와 정부개입의 최소화의 조율은 업계

의 자율규제를 기본으로 하여 정부의 법정책적인 보호 및 규제를 병행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업계의 충실한 자율규제를 촉구하고,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전자상거래도 경제활동의 일부로서 거래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법제도를 통한 정부의 개입은 전자상거래 발전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새로운 유형의 경제활동인 전자상거래의 발전에는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경쟁력이 요구된다. 민간자율규제와 정부개입의 최소화의 조율은 업계의 자율규제를 기본으로 하여 정부의 법정책적인 보호 및 규제를 병행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업계의 충실한 자율규제를 촉구하고,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 형성의 전망을 중심으로 국내 전자상거래 규범 형성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참 고 문 헌

1. 서병조, 'OECD의 전자상거래논의동향', Korea@OECD 2000.
2. 양유석, '전자상거래의 비즈니스 모델과 미국의 EC동향', 삼성경제연구소 2000.
3. 이상철, '인터넷의 특성과 전자상거래제도', 법제 2000.
4. 전삼현, '전자상거래와 지적재산권 보호', 법제 2000.
5. 전자거래기본법, 1999년 2월 8일 제정 (법률 제5834호).
6.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1999년 12월 30일 공정위 제정.
7. 전자상거래표준약관, 2000년 1월 28일 공정위승인.
8. 산업자원부 · 한국전자거래(CALS/EC)협회, 전자상거래백서 2000.
9.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해설서, 2000.
10. 한국전산원, 정부 전자문서를 위한 인증 소프트웨어기능 표준에 관한 연구, 1998.
11. 전경련 B2B 특별위원회, B2B 전자상거래 분쟁 대응과제, 2000.
12. G커머스포럼, 전자상거래 국제규범화 동향과 정부의 대응방안, 2000.
13. 한국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과, <http://www.ecommerce.go.kr>
14. 한국 전자거래진흥원, <http://www.kiec.or.kr>